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35 제출연월일: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직진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균형발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안 제11조)

구 분	내 용
신 설	- 균형발전추진단
이 관	- 도시전략과, 신청사건립추진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명칭변경	- 신청사건립추진단 → 신청사건립추진과- 원도심활성화추진단 → 도시전략과

나. 국 명칭변경(안 제3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행정관리국 → 행정문화국 - 생활복지국 → 복지가족국

다. 행정문화국 부서조정(안 제4조)

구 분	내 용
신 설	- 체육관광과
폐지	- 협치분권과
명칭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라. 기획재정국 부서조정(안 제5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홍보정책과 → 홍보소통과 - 세무1과 → 재산세과 - 세무2과 → 지방소득세과

마. 미래경제국 부서조정(안 제6조)

구 분	내 용		
폐지	- 스마트도시과		
명칭변경	- 정보통신과 → 스마트정보과		
직제순위 변경	 자원순환과(6) → 자원순환과(3) 정보통신과(4) → 스마트정보과(5) 		

바. 복지가족국 부서조정(안 제7조)

구 분	내 용		
신 설	- 복지지원과		
명칭변경	- 가족정책과 → 출산보육과		
직제순위 변경	 가족정책과(5) → 출산보육과(4) 		

사. 도시관리국 부서조정(안 제8조)

구	분	내 용
0]	관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 균형발전추진단 이관 도시재생과 → 균형발전추진단 이관

아. 안전교통국 부서조정(안 제9조)

구 분	내 용
신 설	- 안전체험관
이 관	- 건설관리과 → 도시관리국 이관

자. 보건소 부서조정(안 제13조)

구 분	내 용
명칭변경	- 보건행정과 → 보건관리과

차. 각 부서 사무분장 조정·정비(안 제4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인건비 493,665천원이 예상됨.

(도시균형발전추진단(4급)의 신설, 3개 부서 신설 및 2개 부서 폐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4. 3. 22. ~ 4. 1.)결과: 의견없음
 - *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 수정으로 재입법예고(2024. 3. 29.~ 4. 1.)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추진단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추진 단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의 과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 제3조(국·담당관)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 기획 재정국,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감사담당관 을 둔다.
- **제4조(행정문화국)**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 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구청사 관리, 전시운영 비상대비, 인사, 조직, 직원 교육, 직원 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 동 행정, 선거 및 주민등록,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 협력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종무 업무, 국가유산 관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4. 생활체육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타 체육지원, 관광 진흥, 관광사업·유통 관련 업소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5. 학교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장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처리, 자료의 보관·열람, 가족관계등록, 여 권 발급에 관한 사항
-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예산편성·배정·교부, 성과평가, 제안제도, 공기업 경영지원, 법제 및 규제심사, 소송사무, 통계조사에관한 사항
- 2.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제공, 구정신문 발행, 구보 발간, 미디어·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 3.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 4.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 주택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미래경제국)** ① 미래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 환과, 녹색환경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
 - ② 미래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 인 지원, 유통·물가 관리, 가축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2. 일자리 창출·지원 및 고용안정,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청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3.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업 위탁업체의 지도·관리, 환경공 무관, 자원 재활용, 청소시설 설치 및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4. 환경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기후변화대응,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화 지원, 스마트시티 조성ㆍ지원,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

- 호. 홈페이지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복지가족국) 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둔다.
 - 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총괄기획,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보훈,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지원, 1인가구 지원에 관 한 사항
 - 2. 지역자원의 발굴 및 관리, 돌봄SOS 사업, 주거복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 3.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의료보장,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4. 출산 장려,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가족지원,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5.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지원, 아동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7.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주택건설사업자 지도·감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변경

- · 말소 및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2.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등록·관리, 가로환경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 국공유지 사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3.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 디자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옥외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 4.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설계·시공·감독, 위법건축물, 공공건축물, 건축사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로수 등 조경 관리, 농업인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6. 지적공부 관리, 부동산 거래 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지적관리, 지가조사,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제9조(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체험관을 둔다.
 -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의 예방·수습·복구지원, 을지연습, 민방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관한 사항
 - 3. 하수·하천관리, 하수·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지하수 개발·이용,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

- 4.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등록 및 신고, 자동차검사, 우수사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5.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6.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사담당관) ①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감사행정의 총괄 및 조정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 2.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 3. 시민불편 및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
- 4. 공공갈등 관리 및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제11조(한시기구) ① 도시 균형발전의 실행력 확보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균형발전추진단과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둔다.
 - ② 균형발전추진단에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둔다.
 - ③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시균형발전 관련 정책,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관한 사항
 - 2.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택지개발지구 관리・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 3.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

- 업,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4.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 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 제13조(보건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보건관리과, 건 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를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 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4조(직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15조(동의 설치)**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직무) 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장 조직 및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② 동장은 지역자원 발굴 등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힘써야 한다.

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명칭 및 관할구역 등) 동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균형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를 "행정문화"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부분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각각 "신청사건립추진과장"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를 "도시전략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추진단 기능)"을 "(전담부서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추진단"을 "도시전략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추진단장"을 "도시전략과 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 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 다.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 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 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체육과"를 "체육관광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행 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 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문화 국장"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 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홍보정책과"를 "홍보소통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 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정 책과장"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 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행정문화 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활 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

장"을 "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

<u>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

		관 할 구 역		
동 명 칭	등 명 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일 부 지 역 관 할	
염 창 동	강서구 양천로67가길 63 (염창동, 염창동주민센터)		가양동 1494, 1494의 1에서 5까지의 지역	
등촌제1동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55 (등촌동, 등촌제1동주민센터)		등촌동 648의 6을 기점으로 하여 공항 대로를 따라 656의 57에서 화곡로를 따 라 628에서 양천로를 따라 633의 7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역	
등촌제2동	강서구 등촌로 143 (등촌동, 등촌제2동주민센터)		등촌동 566의 28을 기점으로 등촌로를 따라 505의 2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534 의 11까지와 화곡동을 경계로 572의 18 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등촌제3동	강서구 화곡로63길 96 (등촌동, 등촌제3동주민센터)		등촌동 657의 3을 기점으로 공항대로를 따라 발산역사거리 673의 1에서 강서로 를 따라 684의 4까지와 가양동을 경계 로 685번지와 693번지, 10의 13을 지나 78의 7까지에서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 역	
화곡본동	강서구 초록마을로5길 29 (화곡동, 화곡본동주민센터)		화곡동 24의 346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화곡로를 따라 1076의 19에서 강서로를 따라 105의 534까지와 102번지, 56번지 일대를 포함하여 산41의 8, 산 42의 3, 산42의 1, 산48의 2, 산47의 16을 경계 로 772의 49에서 971의 2와 1을 지나 9 73의 1까지와 24의 331을 지나 기점까 지 이어지는 지역	

		관 할 구 역		
동명칭	동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일 부 지 역 관 할	
화곡제1동	강서구 곰달래로 79 (화곡동, 화곡제1동주민센터)		화곡동 907의 3을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1075의 1까지와 화곡로를 따라 10 70까지와 양천구를 경계로 화곡동 932 의 15까지에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2동	강서구 곰달래로37길 13 (화곡동, 화곡제2동주민센터)		화곡동 844의 2를 기점으로 10M도로를 따라 461의 4를 지나 산22의 4를 경계 로 지적선을 따라 167의 1까지의 지역 과 남쪽으로 886의 8을 지나 국회대로 를 따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3동	강서구 강서로33가길 17 (화곡동, 화곡제3동주민센터)		화곡동 1065의 31을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1006의 2까지와 산105의 1까지의 발산동 경계지역과 1069의 3까지 양천 구와의 경계지역에서 기점으로 이어지 는 지역	
화곡제4동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화곡동, 화곡제4동주민센터)		화곡동 782의 5를 기점으로 국회대로를 따라 843의 7까지와 831의 16, 466의 1, 산22의 4를 지나 화곡본동과 등촌2동을 경계로 772의 64까지에서 등촌로를 따 라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화곡제6동	강서구 화곡로 312 (화곡동, 화곡제6동주민센터)		화곡동 1125의 13을 기점으로 공항로를 따라 1135의 6에서 발산동을 경계로 산 214까지와 8의 1, 992번지, 984번지 일 대를 지나 우장초등학교를 경계로 하고 23의 4에서 기점까지 화곡본동과 등촌 동을 경계로 하는 지역	
화곡제8동	강서구 곰달래로25길 45 (화곡동, 화곡제8동주민센터)		화곡동 887의 2를 기점으로 국회대로를 따라 888의 9를 지나 강서로를 따라 산 162의 1까지와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 곡2동의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 역	

			관 할 구 역
동 명 칭	명 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일 부 지 역 관 할
우장산동	강서구 우현로 34 (화곡동, 우장산동주민센터)		화곡동 18의 5 우장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화곡로를 따라 1064의 4에서 강서로를 따라 내발산동 645의 1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119까지와 화곡제6동, 화곡본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가양제1동	강서구 허준로 30 (가양동, 가양제1동주민센터)		마곡동 723의 2를 기점으로 방화제1동 과 방화제3동을 경계로 올림픽대로를 따라 가양동 1459의 9(강서로80길 117) 까지와 등촌제3동과 가양제2동을 경계 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가양제2동	강서구 허준로 93 (가양동, 가양제2동주민센터)		가양동 14의 73을 기점으로 양천로를 따라 18의 24에서 가양제1동을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과 가양제3동 경계지역
가양제3동	강서구 허준로 202 (가양동, 가양제3동주민센터)		가양동 448을 기점으로 양천로를 따라 449의 19까지의 염창동과 가양2동을 경 계로 하는 이북지역
발산제1동	강서구 강서로47길 54 (내발산동, 발산제1동주민센터)		내발산동 723의 9를 기점으로 강서로를 따라 644의 2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공 항동과의 경계를 따라 산72의 2를 지나 경기도, 양천구, 화곡동을 경계로 기점 까지 이어지는 지역
공 항 동	강서구 송정로 45 (공항동, 공항동주민센터)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공항동 2의 17을 기점으로 방화대로23 길을 따라 방화대로21길을 만나는 지역 과 공항동 1388에서 방화동로를 따라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전지역과 894에 서 마곡서로를 따라 발산제1동과 방화 제1동을 경계로 하여 기점까지 이어지 는 지역

		관 할 구 역		
동 명 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방화제1동	강서구 방화대로 330 (마곡동, 방화제1동주민센터)		방화동 609의 187을 기점으로 방화동로 를 따라 방화동4거리에서 개화산역을 지나 행주대교 방향으로 507의 31까지 와 방화제3동을 경계로 마곡동 1181을 지나 마곡동 737-12에서 가양제1동과 공항동을 경계로 기점까지 이어지는 지 역	
방화제2동	강서구 개화동로21길 52 (방화동, 방화제2동주민센터)	개화동	방화동 621의 24를 기점으로 방화동로 를 따라 방화동3거리로 이어지는 이서 지역	
방화제3동	강서구 금낭화로24길 5 (방화동, 방화제3동주민센터)		마곡동 1158번지를 기점으로 방화제1 동을 경계로 산173의 2번지를 종점으로 한 이북지역으로 가양제1동과 방화제2 동을 경계로 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공무원 봉급표

나. 공무원 봉급 인상률 1.8%(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하여 비용 추계

다. 한시기구 운영시한 동안의 인건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72,535	147,682	150,341	123,107	493,665

※ 2024년 인건비: 6개월분 산정(2024. 7. 1. 이후)

※ 2027년 인건비: 4급(1명), 9급(1명) 6개월분 산정(한시기구 운영시한: 2027. 6. 30. 까지)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비용	산출내역	비고
상계(a+b-c)	72,535천원		
4급 (a)	51,331천원	51,331천원 × 1명	
5급 (b)	44,154천원	44,154천원 × 1명	
9급 (c)	22,950천원	11,475천원 × 2명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합계
~~~~~~~~~~~~~~~~~~~~~~~~~~~~~~~~~~~~~	72,535	147,682	150,341	123,107	493,665

6. 작 성 자: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장 장주민

(담당: 행정8급 김현아/ ☎ 2600-1722)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4-12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성 명	최윤선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조치일	2024. 4. 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조직진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한시기구 '균형발전추진단' 신설(안 제3조, 안 제11조)
- 국 명칭변경(안 제3조)
- 국별 부서조정(신설, 폐지, 명칭변경, 직제순위 변경등)(안 제4조)
- 각 부서 사무분장 조정·정비(안 제4조~안 제11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직진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강서01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김현아	전화번호	02-2600-1722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당부서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안소현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2024년 03월 28일					
제출일자						
완료(제외)	2024년 03월 29일					
통보일자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4월 01일

## 붙임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39호, 2024. 1. 16., 일부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 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

- 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u>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u>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개정 2020. 3. 10.>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2020. 3. 10.>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 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 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u>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u>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임명한다.